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소프트웨어산업법

주체93(2004)년 6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33호로 채택

제 1 장 소프트웨어산업법의 기본

제 1 조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소프트웨어산업법은 소프트웨어의 생산과 검사, 유통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소프트웨어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 2 조 (소프트웨어산업부문의 지위, 발전원칙)

소프트웨어산업은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하는 정보산업의 기본부문이다. 국가는 소프트웨어산업을 인민경제의 다른 부문보다 앞세워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 3 조 (소프트웨어산업의 계획적발전)

소프트웨어산업을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경제제도의 본성적요구이다. 국가는 소프트웨어부문의 계획화사업체계를 바로 세워 소프트웨어산업의 생산을 늘리고 정보봉사를 개선해나가도록 한다.

제 4 조 (소프트웨어의 검사원칙)

소프트웨어의 검사는 생산된 소프트웨어의 질을 판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특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검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한다.

제 5 조 (소프트웨어의 유통원칙)

소프트웨어의 유통을 원활히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산업발전의 중요공간이다. 국가는 소프트웨어의 판매, 수출입, 정보봉사질서를 정확히 지키도록 한다.

제 6 조 (소프트웨어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원칙)

소프트웨어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국가는 소프트웨어산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 7 조 (대외교류와 협조원칙)

국가는 소프트웨어산업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 2 장 소프트웨어의 생산

제 8 조 (소프트웨어생산의 기본요구)

소프트웨어의 생산은 소프트웨어산업의 기본공정이다.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계획적으로 생산하여야 한다.

제 9 조 (계획작성)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소프트웨어의 생산계획을 과학적으로 세워야 한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추세와 그 수요, 생산조건, 원가, 수익성, 실현가능성 같은 것을 정확히 타산하여야 한다.

제 10 조 (생산단위등록신청)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관명, 기구정원수, 개발분야, 설비보유정형 같은 것을 밝힌 등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제 11 조 (등록증발급)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은 해당 단위의 소프트웨어의 개발 능력과 전문화수준을 검토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등록증을,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힌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 12 조 (계획지표의 우선생산)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을 맞물린 소프트웨어, 협동생산품을 다른 지표보다 먼저 생산하여야 한다.

제 13 조 (생산승인대상의 소프트웨어)

조작체계소프트웨어, 경영업무소프트웨어, 정보보안소프트웨어 같은 국가적범위에서 통일적으로 리용할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4 조 (편집물, 다매체제품생산)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교육과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편집물, 다매체 같은 제품을 생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족의 미풍양속, 사회주의생활양식에 맞지 않는 편집물, 다매체 같은 제품은 생산할수 없다.

제 15 조 (주문생산)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문을 받아 소프트웨어를 생산할수 있다.

주문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문자와 계약을 맺고 해당 자료를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 16 조 (대외주문계약의 승인)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생산을 주문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약문건을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에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은 주문받고 생산할 소프트웨어의 품명, 납입기일, 지불조건, 분쟁해결, 준거법 같은 것을 5일안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 17 조 (소프트웨어의 연구개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 부문의 정보화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적극 연구개발하여야 한다.

개별적공민도 소프트웨어를 연구개발할수 있다.

제 18 조 (제품생산의 의뢰)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공민이 연구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생산, 유통하려 할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주문하여야 한다.

제 19 조 (규격보장과 제정)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규격을 보장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부문규격을 제정하는 사업은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이 한다.

제 20 조 (생산공정확립 및 기술지도)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표별 생산공정을 세우고 그 요구를 정확히 지켜야 한다. 이 경우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는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3 장 소프트웨어의 검사

제 21 조 (검사기관)

소프트웨어의 검사를 바로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근본조건이다.

소프트웨어의 검사는 소프트웨어품질검사기관이 한다.

제 22 조 (검사받을 의무)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품질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제품인증 또는 관리체계인증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한 소프트웨어의 검사를 자체로 할수 있다.

제 23 조 (검사신청서의 제출)

소프트웨어의 검사를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청서를 소프트웨어품질검사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제품의 견본과 요구명세서, 사용설명서 같은 기술문건, 상표 등록증을 함께 내야 한다.

제 24 조 (검사방법)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소프트웨어품질검사기관은 규격과 기술문건에 기초하여 소프트웨어의 기능성, 효율성, 신뢰성, 호환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같은 것이 정해진 기준에 맞는가를 정확히 검사하여야 한다.

제 25 조 (자료요구)

소프트웨어품질검사기관은 검사신청서를 낸 기관, 기업소, 단체에 필요한 자료, 설비 같은 검사조건의 보장을 요구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프트웨어품질검사기관이 요구한다. 검사조건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 26 조 (품질검사증발급)

소프트웨어품질검사기관은 검사에서 합격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합격통지서와 품질 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검사에서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이유를 밝힌 불합격통지서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보내야 한다.

제 27 조 (검사료금)

소프트웨어의 검사를 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한 요금을 물어야 한다.

요금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제 28 조 (기밀보장)

소프트웨어품질검사기관과 해당 일군은 소프트웨어를 검사하는 과정에 알게 된 기밀을 지켜야 한다.

검사에 리용한 기술문건과 자료, 제품견본은 다른 목적에 리용할수 없다.

제 4 장 소프트웨어의 유통

제 29 조 (소프트웨어의 유통질서준수)

소프트웨어의 유통은 생산된 소프트웨어를 판매, 수출입하거나 정보봉사를 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도록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소프트웨어를 유통시켜야 한다.

제 30 조 (상표, 생산단위 표시)

생산한 소프트웨어에는 상표가 있어야 하며 제품의 이름, 기술적특성, 생산단위, 제작날자를 정확히 밝힌다.

제 31 조 (소프트웨어제품의 판매)

소프트웨어의 판매는 정해진 봉사기업소를 통하여 한다.

소프트웨어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기업소를 내오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2 조 (판매할수 없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개발중에 있거나 또는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상표가 없거나, 가격승인을 받지 않은 소프트웨어는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

제 33 조 (소프트웨어의 수출)

소프트웨어를 수출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프트웨어등록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소프트웨어기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소프트웨어는 수출할수 없다.

제 34 조 (소프트웨어의 수입)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연구, 교육 같은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수입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5 조 (정보봉사)

소프트웨어의 설치, 보수봉사와 정보가공봉사, 정보설비봉사, 자문봉사, 정보체계구축공사, 컴퓨터망봉사 같은 것을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6 조 (신용보증제)

국가는 소프트웨어의 판매와 정보봉사에서 신용보증제를 실시한다.

신용보증기간은 상품 또는 봉사의 특성에 맞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정한다.

제 37 조 (소프트웨어의 가격제정)

소프트웨어의 가격은 국내기준가격과 대외기준가격으로 나누어 정한다.

국내기준가격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대외기준가격은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이 정한다.

제 5 장 소프트웨어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

제 38 조 (소프트웨어산업토대강화의 기본요구)

소프트웨어산업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는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앞선 과학기술 성과를 받아들이며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소프트웨어산업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 39 조 (과학연구사업의 선행)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소프트웨어부문의 과학연구사업을 앞세워야 한다.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프트웨어의 기술연구, 생산에서 과학연구기관들과의 연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 40 조 (소프트웨어전문가양성)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소프트웨어부문의 기술자, 전문가양성규모를 체계적으로 늘리고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여 능력있는 소프트웨어기술자, 전문가를 계획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제 41 조 (기술장비의 현대화)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소프트웨어생산설비와 개발도구를 갱신하며 정보자료기지를 꾸리고 소프트웨어산업부문에서 이룩한 성과를 제때에 보급하여야 한다.

제 42 조 (소프트웨어생산기지의 확대)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추세와 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전문화수준을 높이며 소프트웨어생산, 정보봉사단위를 늘여야 한다.

제 43 조 (자금보장)

재정은행기관과 해당 기관은 소프트웨어생산, 정보봉사, 인민경제의 정보화를 위한 설비, 소프트웨어의 구입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지출항목을 바로 정하고 소프트웨어산업부문의 재정관리체계를 세워야 한다.

제 44 조 (정보통신보장)

중앙체신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정보통신보장을 위한 현대적인 통신하부구조를 완비하며 정보의 고속도화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제 6 장 소프트웨어산업부문의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 45 조 (기본요구)

소프트웨어산업부문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소프트웨어산업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소프트웨어산업부문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 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 46 조 (지도기관)

소프트웨어산업부문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는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은 소프트웨어생산, 검사, 유통, 다른 나라와의 공동연구 개발, 봉사사업을 정확히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 47 조 (기업관리의 과학화, 계획맞물림)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소프트웨어생산에서 원단위소비기준과 노동정량을 바로 정하며 기업관리를 과학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소프트웨어부문의 기술연구, 전문가양성, 수출입 같은 계획을 제때에 맞물려주어야 한다.

제 48 조 (감독통제)

소프트웨어산업부문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소프트웨어의 생산, 검사, 유통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 49 조 (반출입검사)

세관과 해당 기관은 반출입하는 소프트웨어의 검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등록기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소프트웨어는 다른 나라로 내보내지 말아야 한다.

제 50 조 (몰수)

판매하지 못하게 된 소프트웨어를 유통시켰거나 승인없이 소프트웨어를 수출입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소프트웨어와 돈을 몰수한다.

제 51 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소프트웨어의 생산과 유통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